

# 彈力關稅制度의 內容과 運用方向

— 弹力關稅制度의 必要性을 中心으로 —

財務部 鑑定課 調查統計係長 李 振 成

## 一. 弹力關稅制度의 意義

彈力關稅制度라 함은 關稅率의 變更 또는 關稅의 割增賦課의 權限을 一定한 範圍內에서 行政府에 委任하여 行政府로 하여금 受任된 範圍內에서 機動性 있게 關稅率을 變更하거나 또는 關稅를 割增 賦課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이다.

이러한 弹力關稅制度는 「代表 없이 稅金 없다」는 슬로건 아래 國會가 定한 稅率 및 租稅의 種目에 依하지 않고는 租稅를 賦課할 수 없다는 正統的인 租稅法律主義에 對한例外措置인 것이다. 그러나 弹力關稅制度는 正統的인 租稅法律主義에 對한例外措置이긴 하지만 이에 正面的으로 衝突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왜냐하면 弹力關稅制度는 關稅率의 變更 또는 關稅의 割增賦課의 要件과 限界를 法律로서 定하였기 때문에 稅率의 變更權이 全幅의으로 行政府에 移讓된 것은 아니고 同一物品에 對하여 複數의 稅率을 國會가 定하고 그 具體的 適用을 行政府에 委任한 것으로 理解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關稅는 財政需要의 充足을 為한 單純한 國民負擔이 아니고 國內產業을 保護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는 點, 그리고 正統的인 租稅法律主義가 議會政治의 初期에 있어서 王權의 橫暴를 牽制하기 為하여 定立된 歷史的 概念이라는 點과 오늘날 行政府의 機能이 夜警으로서의 機能에 머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積極的인 福祉의 向上에 있다는 諸點을 綜合的으로 考慮할 때 弹力關稅制度는 決코 租稅法律主義에違

背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弹力關稅制度는 비록 그 要件과 限界를 法律로서 定하였다 하더라도 그 範圍內에서의 關稅의 弹力의 活用은 行政府에 委任되어 있음으로 租稅法律主義에 對한例外的인 制度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면 이러한 弹力關稅制度는 왜 必要한가를 考察해 보자.

關稅는 勿論 財政需要의 充足에도 그 目的이 있지만 激動하는 世界經濟의 거센 물결로 부터 國內產業을 保護하는 防波堤의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貿易의 直接的인 制限의 緩和를 通한 貿易自由化를 指向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이러한 關稅의 役割은 더욱 加重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境遇 67. 4. 15 GATT(關稅와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加入을 契機로 貿易自由化의 世界的潮流에迎合하였음은 勿論 對內의 으로도 第一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의 成功의 遂行과 第二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의 꾸준한 推進으로 因한 急激한 經濟成長에 따라 새로운 國內產業이 登場함과 同時に 經濟構造의 變動에 따라 稅率間의 不均衡이 發生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의 與件은 關稅에 依한 國內產業의 適期保護와 稅率間의 不均衡을 即刻是正할 것을 要請하고 있다. 또한 低物價國으로 부터 物品의 流入을 效率的으로 防止하며 物價의 調節을 行하고 나아가서 GATT等 國際機構를 通한 關稅交涉을 能率的으로 遂行하기 為하여는 即刻的인 關稅率의 變更이 要請된다. 그런데 이러한 必要性에 對處하는데 있어서 國會의 立法節次를 거

後에 措置하게 된다면 失期할 憂慮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硬直의이며 煩雜한 立法節次 때로 起될 수 있는 失期의 危險性을 排除하는 弹力關稅制度가 必要한 것이다.

## 二. 弹力關稅制度의 内容

[리한必要性에 依하여 우리나라 關稅法에서 署하고 있는 弹力關稅制度의 類型은 不當廉賣上關稅(關稅法 第10條), 報復關稅(關稅法 第11條), 緊急關稅(關稅法 第12條), 相計關稅(關稅法 第13條), 制限的 關稅授權制度(關稅法 第15條), 關稅割當制度(關稅法 第16條)가 있다. 以어서 그 内容을 分說코자 한다.

### 1. 不當廉賣防止關稅

不當廉賣防止關稅란 外國의 Dumping으로 부터國內產業을 過期에 保護하기 为하여 基本關稅附加하여 賦課하는 關稅를 말한다. 現行 우리나라 關稅法 第10條에는 不當廉賣防關稅를 規定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그 内容 살펴보자.

우선 不當廉賣防止關稅의 發動要件을 보면 첫 不當廉賣된 物品의 輸入이 存在하여야 한다. 기서 不當廉賣라 함은 正常價格보다 低廉하게 국에 去來되는 것, 即 通常去來方法으로 一國에서 他國으로 輸出하는 物品의 輸出價格이 輸國에서 消費되는 同種物品에 相應하는 價格보 低廉한 것을 말한다. 둘째로 同種의 國內產이 淙害되거나 淙害될 憂慮가 있어야 한다. 기에서 同種의 國內產業이 淙害되거나 淙害될 憂慮가 있다함은 이미 確立된 國內產業을 實質으로 해치거나 또는 害질 憂慮가 있는 境遇와 規로 設立하고자 하는 國內產業의 確立을 實的으로 遲延시키거나 遲延시킬 憂慮가 있는 遇를 말한다. 셋째로 不當廉賣防止關稅가 賦될 라면 當該 國內生產者의 申請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國內生產者의 申請이 없으면 이는 發動할 수 없는 것이다. 네째로 不當廉賣防止關稅는 政府가 不當廉賣의 事實을 確認하고 이에 따라 國內產業을 保護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 限하여 發動한다. 이 境遇政府가 不當廉賣의 事實을 確認하기 为하여 必要한 때에는 海外駐在稅關公務員 또는 海外公館長으로 하여금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不當廉賣의 事實은 비록 確認될지라도 當該 國內產業을 保護할 必要性이 없는 境遇 例컨대 當該 國內產業이 國際競爭에서 優位에 있기 때문에 別다른 特別한 保護措置가 不要한 境遇에는 이는 發動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不當廉賣防止關稅의 發動의 限界를 살펴보자. 첫째로 不當廉賣防止 關稅는 無期限으로 賦課하는 것이 아니라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賦課하여야 한다. 即 이는 恒久의으로 存續할 수는 없는 것이며 必要한 最少限의 期間에 만 賦課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不當廉賣防止 關稅는 正常到着價格과 不當廉賣價格과의 差額의 限度內에서 賦課한다. 따라서 國內產業이 淙害된다 할지라도 그 差額 以上을 賦課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不當廉賣防止關稅의 賦課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짐으로 弹力關稅制度의 하나의 類型으로 存在하는 것이다.

이러한 不當廉賣防止關稅는 GATT 第6條에도 規定되어 있는 制度로서 美國, 日本, 加奈陀等 世界의 大多數 國家가 採擇하고 있는 制度이다. 그러나 不當廉賣防止關稅를 빙자하여 不當한 關稅를 賦課하거나 不當廉賣關稅의 濫用은 貿易을 淙害하는 要素로 登場할 要因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을 排除하고 國際的으로 統一의 为了 不當廉賣防止關稅의 賦課를 为하여 Kenedy Round 協商의 一環으로 非關稅障壁委員會에서 “GATT 第6條 施行에 關한 協定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이 協定에 加入할 것으로 展望된다.

### 2. 報復關稅

報復關稅는 우리나라의 輸出商品 또는 船舶 및 航空機에 對하여 不利한 取扱을 하는 境遇에 關稅를 割增 賦課하는 것을 말한다.

現行 우리나라 關稅法上 報復關稅의 發動要件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輸出商品 船舶 또는

航空機에 대하여不利한取扱을 하는國家가存在하여야 한다. 둘째 그러한國家로부터 우리나라에輸入되는物品이存在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境遇 그國家에서輸入되는全物品을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國家와物品을大統領令으로定하여 그範圍內에서만賦課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報復關稅의發動界限를 보면 그物品의課稅價格相當額以下의範圍內에서賦課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報復關稅制度는世界各國의大部分이採擇하고 있으나 이의發動의例는 거의찾아볼수없다. 왜나하면報復關稅의發動은關稅戰爭을惹起시킬可能性이있기때문이다.

### 3. 緊急關稅

緊急關稅란外國에서의價格의低落等豫期치못하였던事情의變化에따라特定物品의輸入이急증되어國內產業에重大한影響을줄非常事態가發生하였을境遇賦課하는關稅를말한다.

現行우리나라關稅法上緊急關稅의發動要件을보면첫째外國에있어서의價格의低落其他豫想하기못하였던事情의變化가있어야한다. 이러한豫想하지못한事情이란新發明技術의革新運送手段의發達等으로因하여價格이低落하거나供給ability이向上되는것을말한다. 둘째로이러한外國의事情變更에따라特定物品의우리나라에의輸入이急증되어야한다. 셋째로이러한輸入의增加가우리나라의同種物品 또는이와代替性이있는物品을生產하는產業에重大한損失을가져오거나가져올憂慮가있어야한다. 넷째로緊急關稅는우리나라產業에重大한損失을가져오거나가져올憂慮가있는境遇일지라도이의即刻의對處가必要한境遇即緊急하다고認定되는境遇에만發動할수있다.換言하면緊急關稅는經濟非常權의一種에屬하는것으로서一般的의事態에는發動할수없는것이다.

또한緊急關稅의發動界限를보면첫째當該物品의課稅價格과이와同種 또는類似한物品

의國內都賣價格과의差額에서基本關稅率에依한關稅를控除한金額以下의範圍內에서緊急關稅를賦課할수있다. 即緊急關稅의行政政府에依한賦課의限界는

{(國內都賣價格-課稅價格)-基本關稅率에依한課稅}의範圍내인것이다.

둘째로우리나라가GATT의會員國임으로GATT讓許稅率이있는바이에對하여도緊急關稅를發動할수있다. GATT讓許稅率에對한緊急關稅의發動界限를보면讓許를撤回하거나基本關稅率(基本關稅率에對하여앞에서言及한緊急措置가取해져있는境遇에는緊急關稅를包含하는率)의範圍內에서讓許稅率을修正하여基本關稅率을適用토록하거나修正後의稅率에依하여關稅를賦課할수있는것이다. 이를例示하면稅番0201-20羊肉의境遇基本關稅率이35%이며GATT讓許稅率이25%이다. 이境遇緊急關稅의發動事由가充足되었다면政府는첫째이의讓許稅率을撤回하여35%의basic關稅率을適用케할수있고둘째로讓許稅率을35%(basic關稅率)의範圍內에서修正하여30%程度의稅率을適用토록할수도있으며셋째로basic稅率35%만으로도國內產業保護가未治할때는basic關稅率을{(國內都賣價格-課稅價格)-basic關稅率에依한關稅}의範圍內에서引上하여(例컨대60%)그範圍內에서讓許稅率을修正하거나(例컨대50%의關稅를賦課)또는讓許를撤回하고緊急措置에依하여引上된basic關稅率即60%를賦課할수도있는것이다. 셋째로GATT讓許稅率을撤回하거나修正하는境遇에는GATT會員國인利害當事國과協議하여他物品에對하여撤回나修正의代償으로讓許를하여야하는바이러한境遇에行政政府는緊急關稅를發動하여이미讓許한物品에對하여는讓許稅率을보다더引下하거나또는讓許되지않은物品에對하여는basic關稅率以下로引下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措置는앞에서言及한緊急關稅의發動要件을充足시키는것은아니나GATT讓許品目에對한緊急關稅의發動에對한後遺症의治癒策으로一般的으로認定되는것이다. 넷째로우리나라商品의

出國에서 우리의 關心品目에 對한 GATT 讓  
稅率을 撤回하거나 修正하는 境遇에는 이에  
即刻的인 報復措置로서 그 國家와 物品을  
定하고 그 物品에 對한 基本關稅 以外에 그  
品의 課稅價格 相當額의 範圍內에서 關稅를  
課하거나 當該物品이 이미 許된 物品인 境  
내는 許稅率의 適用을 停止하고 基本關稅率  
依하여 關稅를 賦課할 수 있는 이러한 措置  
亦是 緊急關稅의 固有한 發動要件을 充足시  
는 것은 아니나 他國의 緊急關稅發動에 對한  
急對策으로 認定되고 있는 것이다. 即 이 措  
는 緊急關稅의 意味보다는 오히려 報復關稅의  
未를 보다 強烈히 풍기고 있는 制度이다.

이렇듯 이러한 緊急關稅는 GATT 第19條에서  
認定하는 制度이며 美國, 英國, 日本, 加奈  
等 世界各國의 大部分이 採擇하고 있는 制度  
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의 頻繁한 發動은 貿  
을 障害하는 커다란 要因이 되고 있음으로 이  
發動은 緊急한 非常事態에 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許稅率의 撤回 또는 修正  
따라 他物品으로 報償하기 為하여 또는 他國  
우리나라 關心商品에 對한 許의 撤回 또는  
正에 對한 報復措置로서 緊急關稅를 發動하는  
遇에는 必要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할 것은 賛  
을 不要한다.

#### 4. 相計關稅

相計關稅는 輸出國에서 補助金 嘉勵金等이 直  
또는 間接으로 交付된 輸入品에 對하여 그 競  
力を 減殺시키기 為하여 賦課하는 關稅를 말  
다.

우리나라 現行 關稅法上 相計關稅의 發動要件  
보면 첫째 輸出國에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定物品의 生產이나 輸出에 關하여 嘉勵金 또  
補助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둘째로 이러한  
品의 輸入이 國內產業을 阻害할 憂慮가 있어  
한다.

이러한 要件이 具備되면 그 對象國과 物品을  
統領令으로 定하여 相計關稅를 賦課할 수 있

바 그 發動의 限界를 보면 相計關稅는 該當  
勵金 또는 補助金과 同額以下의 範圍內에서

賦課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相計關稅에 對하여는 GATT 第6條  
에도 規定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世界各國에서  
도 通例의 으로 採擇하고 있는 制度이다.

#### 5. 制限的 關稅授權 制度

制限的 關稅授權 制度라 함은 一定한 法定의  
要件下에서 行政府가 關稅率을 引上 引上할 수  
있는 制度로서 彈力關稅制度의 代表적인 形態이  
다.

現行 우리나라 關稅法에는 引上과 引下의 境  
遇를 區分하여 制限的 關稅授權制度를 設定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論述코자 한다.

우선 引上의 境遇에 있어서 制限的 關稅授權  
制度를 發動할 수 있는 境遇를 보면

(1) 國民經濟上 重要한 國內產業을 緊急히 保  
護할 必要가 있을 때

(2) 特定物品의 輸入을 緊急히 抑制할 必要가  
있을 때

(3) 產業構造의 變動으로 物品間의 稅率이 顯  
著히 不均衡하여 이를 是正할 必要가 있을 때로  
되어 있다.

또한 引上의 限界는 基本關稅率에 課稅價格의  
100分의 50에 相當한 率(從量稅)의 境遇에는 이  
에 相當한 關稅額을 加算한 率의 範圍內로 되어  
있다. 이를 例示하면 稅番 5501—20 緣綿의 境  
遇 基本關稅率이 10%임으로 制限的 關稅授權制  
度에 依한 引上의 最高限은 60%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制限的 關稅授權制度에 依한 引下의  
境遇를 보면

(1) 物資需給에 重大히 跌跌이 있거나 物價의  
調節을 為하여 特定物品을 緊急히 輸入할 必要  
가 있을 때

(2) 國內에서 生產되는 獨占 또는 寡占物品의  
價格騰貴를 抑制할 必要가 있을 때

(3) 產業構造의 變動으로 物品間의 稅率이 顯  
著히 不均衡하여 이를 是正할 必要가 있을 때로  
되어 있다.

또한 引下의 限界를 보면 基本關稅率에서 課  
稅價格의 100分의 50에 相當한 率(從量稅)의 境

遇에는 이에相當한 金額)을 減한 範圍內로 되어 있다. 그러나 基本關稅率이 100分의 50 以下일 때에는 그 稅率을 減한 範圍內로 되어 있다.

이를 例示하면 稅番 5311—10 紡毛織物의 境遇 基本關稅率이 100%임으로 引下의 最下限은 50%인 것이다. 그러나 稅番 5301—10 原毛의 境遇 基本關稅率이 10%임으로 引下의 最下限은 —40%가 아니라 「0」%에 그치는 것이다.

이러한 制限의 關稅授權制度는 租稅法律主義에例外措置일 뿐만 아니라 經濟界에 미치는 效果도 를 것이豫想됨으로 이의 發動에는 慎重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제한의 關稅授權制度에 對한 各國의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 <美國의 制度>

#### 가. 通商 擴大法 第201條

1962年 7月 1日부터 1967年 7月 1일까지 外國과 通商協定을 締結하는데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은 現行稅率의 變更 据置無稅品의 据置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으며 關稅率의 變更에 있어서는 1962年7月1日 現在 稅率의 50%以內에서 引下할 수 있고 또한 1934年7月1日 現在 稅率의 50%以內로 引上할 수 있다.

#### 나. 關稅法上의 規定

##### 1) 關稅法 第336條(內外 生產價格의 平準化)

##### ② 品目 및 稅法의 變更

大統領 國會 및 關稅委員會의 要請과 特定輸入物品의 利害關係者(生産者와 輸入業者)의 申請에 對하여妥當性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關稅委員會는 特定輸入物品의 內外生產價格差를 調查하여야 한다. 調查結果 國內生產品과 主要競爭相對國과의 生產價格差가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大統領은 該物品에 對한 價格差額을勘案하여 法定稅率의 上下限 50% 範圍內에서 關稅率을 變更할 수 있다.

##### ④ 美國國內販賣價格 A.S.P)의 變更

前項에 依한 調查結果 內外 生產價格差가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美國國內販賣價格을 基礎로 한 從價稅率을 提示하여야 하며 이의 境遇의 關稅率은 法定稅率의 上下限 50%範圍內에서 變

更한다.

##### 2) 關稅法 第337條(輸入에 있어서의 不當去來)

不當한 輸入方法이 美國의 產業을 阻害하거나 獨占化시킬 憂慮가 있다고 大統領이 確認한 境遇에는 大統領은 關稅委員會의 不當如否調查와 公聽會를 通한 再調查結果에 따라 特定物品의 輸入을 禁止할 수 있다.

#### 다. 關稅法 第350條(貿易增進)

大統領은 美國產品의 外國市場擴大를 為하여 外國과 貿易協定을 締結함에 있어서 上下限 50%의 範圍內에서 關稅率을 變更할 수 있다.

### <比律賓의 制度>

##### 關稅法 第401條(彈力關稅)

④ 大統領은 關稅委員會에 依한 調查와 國家經濟會議의 建議에 따라 關稅率의 變更이 國家經濟 公共福祉 및 國防上 有利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法定 關稅率의 50%까지 引下하여 5倍까지 引上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⑤ 大統領은 關稅의 形態(從價稅를 從量稅로 從量稅를 從價稅로)를 變更할 權限을 갖는다.

### <뉴질랜드의 制度>

##### 關稅法 第124條(關稅率 變更權)

④ 總督은 다음의 境遇에 關稅率을 變更할 수 있다.

① 特定物品에 對한 現行關稅의 賦課 또는 免除가一般的 公共利益과 뉴질랜드에서 營爲되고 있는 產業 및 貿易에 特別히 有害하거나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

② 뉴질랜드產品이 他國에서 過度한 關稅를 支拂할 때

③ 뉴질랜드產의 特定物品이 他國으로 輸入됨이 禁止되거나 制限되어 뉴질랜드에서 營爲되고 있는 產業 및 貿易에 損害를 줄 때

④ 關稅率의 變更에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營爲되고 있는 產業 및 貿易을 保護하기 為하여는 새롭히 賦課되는 關稅는 賦課된 關稅額을 超過할 수는 없다.

### 6. 關稅割當 制度

割稅割當制度란 特定輸入品의 必要輸入量의  
과 超過輸入量의 輸入間에 稅率의 隔差를  
可能한限 輸入數量을 一定한 水準에서 抑  
려는 二重稅率制度를 말한다. 即 特定輸入  
輸入에 있어서 一定量까지는 低率의 關稅  
賦課하고 그 以上의 輸入量에 對하여는 高率  
關稅를 賦課함으로써 國內生產者와 消費者的  
를 調整하는 關稅制度이다. 여기에서 必要  
量을 割當數量이라 하고 超過輸入量을 割當  
數量이라 하며 低率의 稅率을 割當內稅率, 高  
率稅을 割當外稅率이라 한다.

割當數量의 策定은 通常 一定期間內의 特定物  
國內需要量을 推定하여 同物品의 國內生產  
數量을 減하여 決定한다. 또한 割當數量의  
方法은 需給의 長期的 觀點에서 數量을 固  
키는 固定割當과 需給의 變動을勘案하여  
가 分期마다 決定하는 伸縮割當이 있다. 또  
決定된 割當數量에 對하여 具體的으로 이를  
者에게 割當하는 方式에는 輸入業者の 輸入  
의 順으로 割當하는 先着順方式과 割當數量  
輸入業者를 輸入通關의 事前에 決定하는 事  
割當方式이 있다.

나라의 現行 關稅法上 關稅割當度를 보면

各國의 關稅割當制度 比較表

名	品 名	割當方式	備 考
國	크림 牛乳 家畜 生鮮 冷凍鮮等 과 크로바 種子 金屬洋食器	先着順 方 式	關稅讓許外 免 責條項 發動時 採用
獨	撚糸織物	事前割當 方 式	
	醫藥品 染料 포 리에스탈 樹脂 鐵鋼 亞鉛 알미 늄 石炭	• •	
葡西	輓馬 球根 병아 리 감자 오트 옥 수수 耐火煉瓦 鐵鋼	事前割當 方 式	
本	니켈塊 五酸化 바나듐	事前割當 方 式	

割當數量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게 되어 있으며  
割當內稅率은 基本稅率로 하고 割當外 稅率은  
基本關稅率의 100分의 50에相當한 率(從量稅인  
境遇에는 이에相當한 關稅額)의範圍內에서 定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關稅割當制度  
의 施行에 있어서는 割當數量의 決定方法, 割當  
數量의 配分方法 割當外稅率의 決定等의 節次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關稅割當制度는 GATT에서도 無差別  
適用을 條件으로 認定하고 있는바 各國의 採擇  
된 例는 아래表와 같다.

### 三. 彈力關稅制度의 運營

지금까지 우리는 彈力關稅制度의 意義와 그 內容을 考察하였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彈力關稅制度는 租稅法律  
主義에 對한例外措置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制度는 行政府가 專擔의으로 運營하는 것이  
기 때문에 失期의 危險性은 排除되지만 滅速의  
愚를 犯할 可能性은 없지 않은制度이다. 따라서  
彈力關稅制度를 合目的의으로 運營하기 為하여  
는 充分한 檢討와 慎重한 節次에 依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

以下에서 關稅法 施行令에 規定된 彈力關稅  
制度의 運營方向을 살펴보자.

#### 1. 單力關稅制度의 運營方向

彈力關稅制度를 活用하여 特定物品의 基本關  
稅率을 變更하거나 關稅를 加算 또는 引下할 必  
要가 있을 때에는 우선 主務部長官은 當該物品  
에 基礎調查를 한後 財務部長官에게 要請하도록  
되어 있다.

主務部長官이 調查하여야 할 事項은

- (1) 國內 需要量
- (2) 國內 生產量
- (3) 國內 生產價格
- (4) 主要 競爭相對國의 輸出價格.
- (5) 引上 또는 引下하고자 하는 關稅率
- (6) 基他 必要한 事項

例컨대 當該物品의 우리 나라에서의 附隨價值

또는 代替性이 있는 物品의 需要量 및 生產量 또는 當該物品의 輸入動向等을 調査하여야 한다.

이러한 主務部長官의 要請을 받은 財務部長官은 또한 獨自의으로 이러한 主務長官의 基礎調査를 檢討하여야 한다. 이러한 檢討를 行함에 있어서 國內生產價格 및 主要 競爭相對國의 輸出價格을 關係機關으로 하여금 調査토록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機關으로 하여금 調査토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財務部長官은 이러한 檢討함에 있어서는 財務部長官의 諮問機關인 關稅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檢討結果 當該物品의 關稅를 引上 또는 引下할相當한理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會의 議決을 거친 後 大統領의 裁可를 얻어 그 內容을 大統領令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보건대 彈力關稅制度를 運營함에 있어서는 充分한 檢討와 慎重한 節次를 거치게 되어 있음으로拙速의 愚를 犯할 餘地는 極히 작아졌다 하겠다.

## 2. 關稅審議 委員會

彈力關稅制度의 運營에 있어서 가장 中樞的役割을 하는 것이 關稅審議委員會이다. 이러한 關稅審議委員會에 對하여 以不에서 考察해 보자.

우리나라의 關稅委員會는 財務部長官의 所屬下에 있는 財務部長官의 諮問機關의 性格을 갖고 있다. 따라서 關稅委員會는 意思의 決定機關은 아닌 것이다. 關稅審議委員會의 構成은 財務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經濟企劃院次官 法務部次官 農林部次官 商工部次官 保健社會部次官의 經濟部處를 中心으로 한 各部의 次官과 韓國產業銀行(總裁 그리고 韓國貿易協會會長 大韓商工會議所會長 韓國關稅協會會長의 業界의 代表와 財政經濟에 關한 學識 및 經驗이 豐富한者中에서 財務部長官이 委嘱하는 2人으로 構成되고 있다.

그리고 關稅審議委員會의 機能은 彈力關稅制度의 運營에 關하려만 財務部長官의 諮問에 應하는 것이 아니며 關稅法의 改正 即 基本關稅率의 變更과 關稅制度의 改善까지도 諮問에 應하

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關稅審議委員會의 適切하고 合目的的인 運營은 彈力關稅制度의 活用에 있어서 必要不可缺의 要締라 하겠다.

여기서 外國의 關稅委員會制度를 考察해 보면 아래와 같다.

### <美國 關稅審議委員會 制度>

#### ⓐ 委員會의 性格

獨立行政機關인 行政委員會

#### ⓑ 構 成

ⓐ 所屬: 大統領의 直屬

ⓑ 構成: 大統領이 任命하는 委員 6名 事務局職員 200餘名

#### ⓒ 機 能

ⓐ 大統領에 報告 및 勸告하는 事項

1) Escape clause(免除條項)의 調査

2) 內外生產原價差의 調査

3) 不公正競爭의 調査

4) 外國의 差別待遇의 調査

ⓑ 大統領에 報告 또는 情報提供을 하는 事項

1) Parity Point調查(1951年 通商協定延長法第3條)

2) 關稅交涉資料의 提供(1948年 行正命令 第10082號)

ⓓ 議會에 對하여 年1回 以上 報告義務를 지니고 있는 通商協定의 實施狀況에 關한 報告(1955年 通商協定延長法 第3條)

ⓔ 財務部長官이 儉賤의 事實이 있다고 決定한 後 그의 儉賤에 依하여 國內產業에 損害를 주었거나 또한 確立이 遲延되었는지 與否에 關한 調査와 이 調査에 依한 裁定의 財務部長官에 對한 報告(1921年 儉賤防止法 및 1954年 稅關簡素化法 第301條)

### <日本 關稅審議委員會 制度>

#### ⓐ 審議會의 性格

大藏大臣의 諮問機關

#### ⓑ 構 成

ⓐ 所屬: 大藏性의 附屬機關

ⓑ 構成: 大藏大臣 및 委員 45人 以內

## 機能

- ④ 大藏大臣의 諮問에 應하여 關稅定率法別表의 改正 其他 關稅率改正에 關한 重要事項을 調査審議함.
- ⑤ 諮問機關이므로 法의으로 大藏大臣이 委員會의 議決과 다른 決定을 行하여도 支障은 없으나 實題의으로 委員會의 議決은 充分히 尊重되고 있음.
- ⑥ 委員會는 大藏大臣의 諮問에 應하는 外에 關稅率에 關하여 大藏大臣에 建議할 수 있음. 建議案의 提出은 3人以上의 委員의 同意가 必要하여 建議案에는 理由를 添付하여야 함.

## 部會

關稅審議委員會는 特定事項의 審議上 必要할 때에는 部會를 設置할 수 있음.

- ⑦ 構成: 會長이 指名하는 委員
- ⑧ 權限: 部會의 權限은 委員會의 決議에 따라 關稅率의 全面的 改正에 따른 大藏大臣의 諮問事項에 對하여 調査審議하고 그 結果를 委員會에 報告되는 것이 通常이나 委員會가 特히 定한 境遇에는 部會의 決義로써 委員會의 決義에 代할 수 있음. 이것은 緊急 關稅部會에서 迅速히 處理를 하기 為하여 定하여진 것임.

## <カナダ國 關稅審議委員會 制度>

### 委員會의 性格

財務部長官의 要請에 依하여 調査報告를 行하는 諮問 機關

### 構成

- ⑨ 所屬: 財務部長官
- ⑩ 構成: 總督이 任命하는 議長 1名 副議長 2名 委員 2名

### 機能

- ⑪ 權限: 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證人을 嘴問하고 證言을 求할 수 있으며 證言 以外에 情報가 正當하다고 判断된 境遇의 調査

### ⑫ 委員會의 調査事項

委員會는 財務部長官의 要請에 依하여 카나다의 產品 또는 輸入品에 關하여 다음事項을 調査. 또한 이의 結果를 財務部長官에 報告하여야 한다.

- 1) 原料品의 內外價格과 當該產品의 生產地에서 消費地까지의 輸送費
- 2) 國內 또는 外國에 있어서 實題의 生產費 및 同生產費의 內外價格을 均等化하기 為하여 必要로 하는 稅率의 引上 또는 引下의 程度
- 3) 內外의 被雇傭의 勞動條件, 能率 및 賃金
- 4) 內外의 生產者, 製造者, 都賣業者, 小賣業者, 其他 業者가 받는 價格 國內에 있어서 生產費 및 消費者價格을 構成하는(또는 影響을 주는) 모든 條件
- 5) 外國과 比較한 國內의 生產 製造價格에 影響을 주는 모든 條件
- 6) 關稅 또는 國內 消費稅가 카나다의 產業 또는 貿易이나 消費者에 주는 影響
- ⑬ 其他 事項  
以上의 外에 委員會는 總督으로부터 다음事項에 對하여 調査할 權限을 附與받고 있음.
  - 1) 關稅定率法 第14條에 關한 事項 即 一定品目에 對하여 消費者的 利益에 害를 주는 製造業者間의 價格協定 團合 또는 共謀을 調査하는 것. 總督은 委員會의 報告에 依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음.
  - 2) 貿易 및 商業에 關한 一般的인 調査委員會의 調査報告書가 提出된 境遇에는 財務部長官은 當該報告書를 議會開會中인 때에는 受領 後 15日以內에 閉會中인 때에는 次期議會開會後 15日以內에 카나다 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3) 訴願의 裁決  
關稅委員會는 關稅法 消費稅法에 依한 訴願을 審查하고 裁決하는 權限이 있고 委員會의 裁決은 最後的인 것임.